



# 대학운동부 주거 환경 가이드라인



# 대학운동부 주거 환경 가이드라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 올림픽공원 테니스 경기장 내  
TEL 02.707.3767 FAX 02.707.3766 www.kusf.or.kr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학스포츠 학생선수 주거환경 캠페인

# 미래를 위한

# 건강한 꿈

# 편한 집에서

# 시작된다!

2025 KUSF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리더십 교육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슬로건 최우수작

강준수(경기대, 씨름) | 김동욱(남부대, 수영) | 김서영(용인대, 탁구) | 김원준(동신대, 축구)  
양민경(충남대, 육상) | 이주영(국립목포대, 배구) | 임예찬(경성대, 야구) | 채진호(우석대, 사격)

대학 학생선수들이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선정한 슬로건으로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경기력 향상에 필수적인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조사 대상** KUSF 회원대학 운동부 학생선수, 지도자, 행정가 총 2,644명

\*학생선수 2,349명(면담 16명), 지도자 224명(면담 8명), 행정가 7명(면담 8명) 참여

**조사 내용** 주거환경 유형별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합숙소 운영, 배정 방법, 만족도 등

**조사 기간** 2023. 10. 23.(월) ~ 11. 10.(금)

**연구 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홍덕기 교수)

\* 본 가이드라인은 「2023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폭력, 성폭력, 일상적 통제 등 스포츠인권 침해의 전반을 다루고자 한 것과는 달리 대학운동부 주거환경에 범위를 한정해 주거환경 실태 및 맥락을 고려하였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2023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전수조사 설문과 심층 면담을 통해 대학운동부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KUSF <2022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학운동부 인권침해의 주요 공간으로 지목되어 온 주거환경에 주목해 인권친화적 주거환경 운영을 위한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NTS



## 목차

<b>제1장</b>	<b>목적</b>	
	제1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과 주거유형	4
	제2절 원칙	6
<b>제2장</b>	<b>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기본정보</b>	
	제1절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관련 문헌분석 결과	8
	제2절 대학별 기숙사 규정 분석 결과	10
<b>제3장</b>	<b>대학운동부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결과</b>	
	제1절 학생선수	12
<b>제4장</b>	<b>법적 근거</b>	
	제1절 대한민국 헌법	20
	제2절 국민체육진흥법	20
	제3절 학교체육진흥법	21
	제4절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	21
<b>제5장</b>	<b>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b>	
	제1절 공간권	22
	제2절 자유권	24
	제3절 평등권	26
	제4절 안전권	28
	제5절 참여권	30
	제6절 문화·교육권	31
	제7절 건강권	32

# 제1장 목적

## 제1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과 주거유형

대학운동부 학생선수의 주거환경 내  
인권 침해 예방, 보호, 증진 및 권리 보장

###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장받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 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KUSF 회원대학(2024년 기준 136개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  
**스포츠 지도자** 및 대학운동부 담당 **체육행정가**



학생선수



스포츠 지도자



체육행정가

## <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주거유형 >

### 주거환경이란?

대학운동부 학생선수가 활용하고 있는 운동부 전용 기숙사, 일반기숙사, 운동부 전용 합숙소, 개인숙소 및 기타 형태를 포함한 **숙소**를 의미함.



### 운동부 전용 기숙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이 사용하는 기숙사에서 학생선수를 일반학생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예시) 방 배정을 학생선수들만 사용하게 하거나 층을 일반학생과 달리하거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달리하는 경우



### 일반 기숙사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방 배정도 같이 받고 생활하는 방식이나 운영 규정에 차이 없이 모든 조건이 동일



### 운동부 전용 합숙소

대학교 내 혹은 교외에 종목별로 운동부 전용 주거환경을 만들어 운동 종목의 특성에 맞춰 학생선수들만 거주하도록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관리

# 제1장 목적



## 제2절 원칙



### 공간권의 원칙

공간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특히, 대학운동부 학생선수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이 요구됨.



### 자유권의 원칙

자유권은 타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신체의 자유, 언론·사상·신념의 자유 등을 포함함.



### 평등권의 원칙

평등권은 특정한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성별, 학년 및 운동 실력에 따른 차별, 주거환경 비용 부담 차별, 기숙사 선발 방식 및 방 배정 관련 차별, 외국인, 장애인,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평등권 침해 사례로 들 수 있음.



### 안전권의 원칙

안전권은 폭력 및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말한다. 주거환경은 학생선수에게 다른 어떠한 공간보다도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



### 참여권의 원칙

참여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운영 규정, 내부 규칙(암묵적 규칙 포함), 편의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 문화·교육권의 원칙

문화권은 교육, 지식,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권은 훈련, 시험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하고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습할 권리를 의미함.



### 건강권의 원칙

건강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함.



# 제 2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기본정보



## 제1절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관련 문헌분석 결과

첫째

개인공간의 미확보에 따른 **사생활이 허용되지 않아** 수면이나 개인 학업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어 그에 따른 내면적 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 등 합숙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운동부 합숙 훈련은 학생선수를 학교생활, 또래문화, 가족과의 교류로부터 **단절**시키고 합숙소의 **취약한 환경, 위압적인 분위기** 등으로 학생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시키고 있었다.



셋째

운동부는 합숙소라는 공간에서 교실수업과는 다른 **합숙 훈련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생이지만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운동선수로서 학교 안의 '운동부'라는 섬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넷째

학생선수의 휴식처가 되어야 할 운동부 주거환경(합숙소)이 체육계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인권의 사각지대**였음이 확인되었다.



주거권(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선수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과 가이드라인 등 국가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와 근거**가 필요하다.

국의 사례로 전미대학체육협회(NCAA)는 대학스포츠 활성화 및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많은 제도·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는 물론 회원 기관들의 공통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이 요구된다.

# 제 2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기본정보



## 제2절 대학별 기숙사 규정 분석 결과 💡 8개 대학교 기숙사 규정 활용

- 01 **방 배정** 대다수 학교에서 관장, 사감, 또는 체육부 부장, 감독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02 **이용 시간** 대다수 학교에서 아침 05시부터 자정 이후까지로 설정했으며, 일부 학교에는 특정 사유에 따라 이용 시간을 연장하거나 귀가 시간을 지연할 수 있도록 했다.
- 03 **기숙사 점검** 질서 유지와 운영 상태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실시되고 있었다.
- 04 **세탁** 대학교에서 세탁실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 건조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대학별 기숙사 규정  
분석ing...

- 05 **위생 및 건강관리** 기숙사 내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취사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재 예방을 위한 화기 단속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 06 **시설 변상** 대다수 대학교가 규정을 마련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동 시설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 07 **외박 및 외출** 외박신청서를 작성 후 사감, 지도자의 승인을 받고, 귀가 시 사감, 지도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 08 **외부인 출입 및 게시물 부착** 학생들의 안전과 기숙사의 질서 유지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과 게시물 부착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 09 **기숙사 입실 및 퇴실** 대학기숙사 입실 조건은 관장의 인정, 학기 등록 완료, 통학이 곤란한 지역에 거주, 신체적 조건으로 통학이 불편,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 가정형편이 곤란, 건강진단서 및 입실 서약서 제출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기숙사 퇴실 조건은 학칙 위반, 생활관비 미납, 강제 퇴사 처분 등으로 나타났다.
- 10 **진로 및 상담 규정** 대다수 대학이 상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

# 제 3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결과

## 제1절 학생선수

### 학생선수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 대상

**학생 선수 2,349명**

남성 1,808명(77%), 여성 541명(23%)

#### 숙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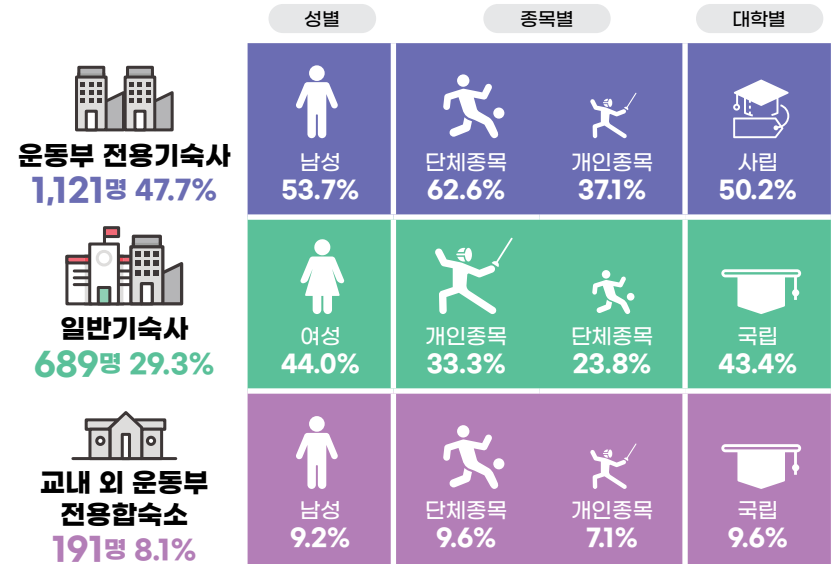
항목	운동부 전용 기숙사	일반기숙사	교내 운동부 전용합숙소	교외 운동부 전용 합숙소	개인 숙소	기타	합계
빈도	1,121	689	97	94	266	82	2,349
%	47.7	29.3	4.1	4.0	11.3	3.5	100

주거환경의 형태는 운동부 전용 기숙사(47.7%), 일반기숙사(29.3%), 개인 숙소(11.3%), 교내외 운동부 전용 합숙소(8.1%) 순으로 조사되었다.

#### 숙소 사용

**합숙소 사용 2,001명 85.1%**

운동부 전용 기숙사, 일반기숙사, 교내(외) 운동부 전용 합숙소 포함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2,349명(남 77%, 단체종목 58.5%, 사립대학 88%)이 참여한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주거환경 실태 조사' 결과, 일반기숙사, 운동부 전용 기숙사, 교내(외) 운동부 전용 합숙소를 포함한 대학운동부의 합숙소 사용은 85.1%이며, 이 중 운동부 전용기숙사 사용이 전체의 약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3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결과

## 숙소 선택의 자율성

개인의 선택 권한 없음  
1,178명 50.2%

성별	남성	여성
	52.2%	43.4%

종목별	단체종목	개인종목
	68.7%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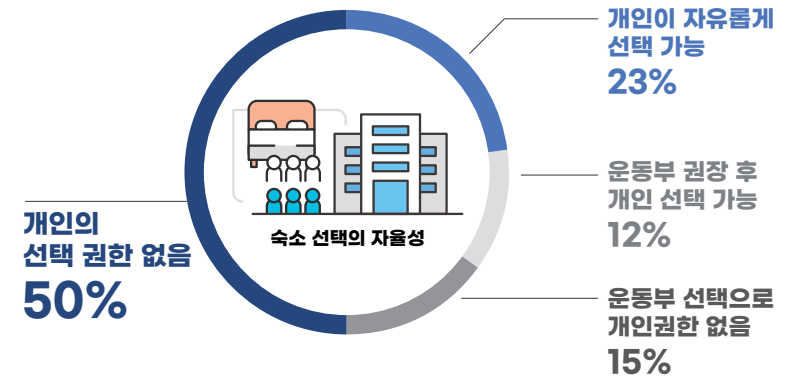
개인 자율 선택  
530명 22.6%

성별	남성	여성
	20.5%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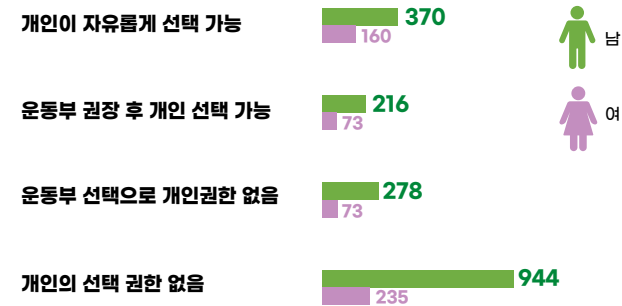
종목별	단체종목	개인종목
	8.2%	32.8%



항목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운동부 권장 후 개인 선택	운동부 선택으로 개인 권한 없음	개인선택 권한 없음	합계
빈도	530	289	350	1,178	2,347
%	22.6	12.3	14.9	50.2	100



학생선수 숙소 선택의 자율성에 대한 성별 차이



학생선수의 숙소 선택 권한 여부에 대해 절반 이상은 개인의 선택 권한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남성·단체종목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 제 3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결과

## 숙소 전담관리자 \* 중복응답

항목	사감(교직원)	지도자	주장	없음	합계
빈도	<b>1,042</b>	879	472	104	2,497
%	<b>42</b>	35	19	4	100

숙소의 전담 관리자는 사감(교직원)(42%), 지도자(35%), 주장(19%)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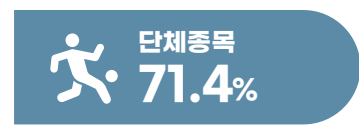
## 종목별



### 사감(교직원)



### 지도자



개인종목의 경우 '사감(교직원) 65%', 단체종목의 경우 '지도자 71.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개인종목의 합숙소는 대부분 교직원이, 단체종목의 합숙소는 대부분 지도자가 전담 관리자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숙소 규정

종목별

### 명확한 생활 규정집 존재

기숙사 공통 규정 **개인종목 54.4%**

운동부 별도 규정 **단체종목 48.7%**

### 운동부 탈퇴 시 퇴소 규정

운동을 그만두면 즉시 퇴소 **단체종목 54.9%**

### 숙소 내 이동 및 취침 통제규정 필요성

필요 **단체종목 47%**

불필요 **개인종목 73.3%**

합숙소 생활 규정은 개인종목의 절반 이상이 기숙사 공통 규정을 적용하며, **단체종목의 경우 운동부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비율이 절반(48.7%)에 근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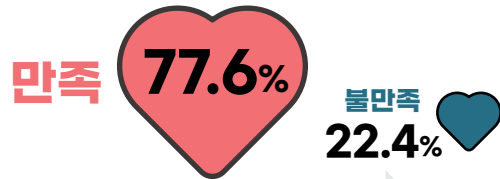
합숙소 생활 규정에서 **단체종목의 절반 이상은 운동을 그만두면 즉시 퇴소**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했다.

합숙소 내 이동·취침 등 통제 규정은 개인종목의 73.3%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단체종목의 47%는 필요하다고 인지했다.**



# 제 3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실태 및 만족도 결과

## 숙소 만족도



교외 운동부 전용 합숙소의 30.9%

- ★ 편히 쉴 공간이다    그렇다 62.4%    매우 그렇다 22.5%
- ★ 학업 공간이다    그렇다 57.9%    매우 그렇다 20.3%
- ★ 소음에서 자유롭다    그렇다 46.0%    매우 그렇다 16.1%



합숙소의 전반적 만족도는 높은 수준(77%)이나, 교외 운동부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의 30.1%는 주거환경에 대해 불만족으로 응답했다.

학생선수의 합숙소에 대한 인식은 '편히 쉴 공간', '학업 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 등으로 나타났다.

## 숙소의 의미

\* 중복응답



- 1 순위 휴식공간 1,548 명
- 2 순위 집 같은 곳 536 명
- 3 순위 운동의 연장 419 명

## 개선점

물질적 지원

규정 개선

학생선수가 생각하는 합숙소의 의미는 '휴식 공간', '집 같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운동의 연장'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생선수가 숙소에 바라는 개선점은 시설 등 '물질적 지원'과 '규정 개선' 등이었다.



그 연장이  
아니잖아



# 제4장 법적 근거

☞ 본 가이드라인은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다양한 관련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함.



## 제1절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등이다.



## 제2절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직장운동경기부의 장은 상시 합숙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 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준수 사항)**은 “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한 명당 2.5㎡ 이상으로 할 것”, “개인용품을 정돈하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합숙소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는 “직장운동경기부가 합숙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운영 규정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제3절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3항** “학기 중의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 훈련을 하는 경우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5항** “학교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4절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제2항** “재산, 소득, 주거 유형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이다.

**주거기본법 제2조**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방침**에 따르면, “초·중학교 기숙사 운영 금지, 고등학교만 운영 가능(전국단위 모집 중학교 제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UN**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적절한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 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으며,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요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물 저장 등의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 인프라와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제 5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은 앞서 언급한 7가지 원칙(공간권, 자유권, 평등권, 안전권, 참여권, 문화·교육권, 건강권)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제1절 공간권

**01 공간 설계 원칙** 기숙사의 중장기 공간 계획은 대학생의 보편적 주거권 실현을 원칙으로 유엔의 사회권 규약 중 거주 가능성에서 제시한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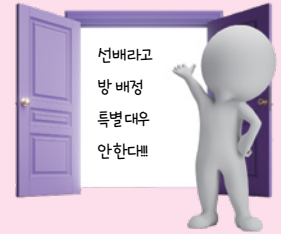
**02 보편적 접근성** 기숙사 내 접근성 및 기숙사에서 학습 공간 혹은 운동 공간으로의 접근성 측면에서 장애 학생, 여학생, 저학년 학생, 비인기 종목 학생, 다양한 젠더의 학생 등 누구나 접근하기 편한, 공정한 공간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03 주거의 면적** 1인당 최소 주거 공간의 확보를 위해 교육부의 학생선수 기숙사 승인 기준(1인당 6㎡) 이상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명시한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 침실 기준(1인당 2.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숙사 내 1, 2인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4인실 이상의 호실은 줄여서 개인 생활 공간을 확보한다.



**04 방 배정** 방 배정의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합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방 배정에 있어서 특정 종목이나 고학년이 좋은 조건의 방을 우선 배정받는 경우, 룸메이트 간 괴롭힘, 성추행 등이 예상됨에도 같은 방을 배정하는 경우, 지도자나 관리자 등이 방 배정 권한을 독점하는 경우 등은 인권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05 시설과 물품 구비**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필수가전(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냉난방 시설(개별 냉난방 등), 쾌적한 환경(실내 공기 질, 생활 소음의 방음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시설과 물품의 구비에 있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06 즉시 신고 및 분리 조치 의무** 대학기숙사는 주거 공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주거 공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안전한 거주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기숙사는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스포츠윤리센터 및 관련 기관 등에 신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 공간을 즉각 분리 조치하여 가해자의 퇴출 등을 고려한다. 분리 조치 시 피해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피해당사자와 신고인의 신변 보호 및 비밀 유지, 안전을 보장하도록 조치한다.

# 제 5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 제2절 자유권

01

**일상적 통제 금지** 대학운동부 주거 공간 내에서 혐의 우위에 의한 일상적 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통이나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선배가 후배에 대해 원치 않는 심부름, 방 청소, 빨래 등을 시켜서는 안 된다.



02

**인권침해 소지의 내부 규정 점검 및 폐지** 대학기숙사 공식 운영 규정 이외에 운동부 내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 통제를 유발하는 내부 규정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지속 점검하여 폐지한다.

03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내에서 나이 또는 성별, 종목에 따라 의사 표현 제한, 복장 제한, 말투 제한, 휴대폰 사용 제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또한, 주거환경 내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04

**외박·외출 제한, 점호, 통금시간 등 운영 규정** 대학기숙사 운영 규정 내 외박·외출 제한이나 점호, 통금시간 등은 구성원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나 구성원 대다수가 이에 찬성하는 경우만 인정하도록 한다. 단, 모든 구성원은 늦게 들어올 때 사전교육을 통해 최대한 룸메이트의 수면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예절을 지키고 양해를 구하며 서로의 자유권을 침해 및 제한하지 않으면서 공동의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05

**상·벌점 제도** 벌점 제도의 경우 일관성 없는 벌점 남용이나 지나치게 엄격한 벌점을 통해 행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는 등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벌점 제도는 예절을 자주 어기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행동의 교정을 유도하는 것에 한해야 하며, 과하지 않은 벌점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권친화적 행동이나 술선수범을 한 경우 상점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내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한다.

06

**상담 프로그램** 대학기숙사는 일반적 규제보다는 학생선수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학생선수가 주거환경에서 인권친화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07

**최소한의 규제 원칙** 대학기숙사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마련하며 학생선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결정한다. 대학기숙사 관리자가 재량권을 발휘하여 학생선수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규제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 제 5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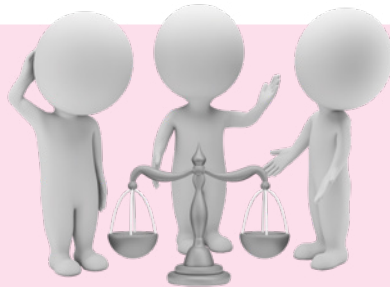
- 08 **타인의 권리 존중** 대학기숙사 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질과 감수성을 갖추도록 교육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 09 **불시 점검 사전 고지 의무** 대학기숙사 관리자의 불시 점검은 위기·응급 상황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실시하며, 시행 직후 반드시 기숙사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10 **퇴실 및 소유물 처분** 퇴실 조치 및 개인 소유물 처분 등에 관한 규정과 수칙은 기숙사 거주자들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제3절 평등권

- 01 **입실 및 배정 방식** 대학기숙사의 입실 및 배정 방식이 나이, 성별, 운동 종목, 운동 실력 등 특정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잘 들어, 앞으로 우린 차별을 배제한다.

- 02 **사회적 소수자 존중** 대학기숙사는 경제 형편이 어렵거나, 통학 거리가 멀거나, 비인기 종목 등 사회적 소수자가 기숙사 입실자 선발에서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생활 및 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경기력이나 학생 유치 등의 명목으로 인해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 03 **차별 금지** 대학기숙사는 주거환경 내에서 나이, 성별, 운동 종목, 운동 실력 등 기준에 따라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04 **재발 방지 대책 및 신고** 혐오 표현이나 차별이 반복되는 경우 벌점제도 등을 마련하여 재발을 막는다. 차별을 넘어 증오범죄(폭행, 협박, 강간, 방화, 테러, 기물파손)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경찰에 알리고 사법적으로 처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언어폭력 등 혐오 표현을 경험하거나 차별을 당한 개인이 자유롭게 그 사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 제 5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 제4절 안전권

01

**안전 규정** 대학기숙사는 재난 예방 체계(화재 예방, 대피로, 소방 훈련, 소화기, 비상구, 스프링클러 등)와 전기 사용(냉·난방, 누전, 감전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소방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02

**정기 점검 및 결과 공개** 대학기숙사는 정기적인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03

**인권침해 예방 대책 마련 및 교육** 대학기숙사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학생선수가 주거환경에서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언어폭력, 신체 폭력, 성폭력, 일상적 통제, 괴롭힘, 차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주거환경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스포츠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04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대학기숙사는 학생선수 주거환경 만족도 및 인권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05

**온라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 대학기숙사는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비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심리 상담 등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06

**인권친화적 CCTV 활용**

대학기숙사는 CCTV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CCTV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예: 학생선수의 행동 통제 감시)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CTV 열람 권한 및 활용에 있어서 인권친화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CCTV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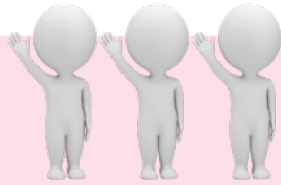
# 제 5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 제5절 참여권

01

**자치회** 대학운동부는 주거환경 관련 자치회를 구성하고 학년별, 성별, 운동 종목별 대표 학생선수를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



02

**의견제시 권한** 대학기숙사는 학생선수가 기숙사 내에서 자신의 권리나 공공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규정에 명시한다.

03

**전담 관리자 배치** 학생선수가 생활하는 기숙사 관리는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여 운동부 지도자는 일과시간 이후에 기숙사 관리 업무를 최소화한다.

04

**전담 관리자 역할** 학생선수가 생활하는 기숙사 전담 관리자는 거주 학생의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관리를 명분으로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05

**정보 공개** 대학운동부는 재정, 회계 등 기숙사 운영에 연관된 중요한 정보를 구성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제6절 문화·교육권

01

**문화 및 교육 시설** 대학기숙사는 운동부 학생선수의 문화 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충분한 휴게공간, 스포츠 시설, 도서관 등을 마련해야 한다.

02

**커뮤니티 활동** 학생선수는 다양한 학생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대학기숙사는 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03

**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대학기숙사는 학생선수가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부상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재활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등 기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04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제공** 대학기숙사는 운동부 학생선수를 위한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 또한 중요합니다



# 제 5 장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 제1절 건강권

01

**정신건강** 대학기숙사는 운동부 학생선수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멘탈 갑을 원하십니까

02

**영양 섭취** 대학기숙사는 학생선수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식단의 다양성과 총질량 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선수는 역시 밥심!!

03

**휴식 보장** 대학기숙사는 생활공간으로 교육 및 훈련 공간과는 구분되어 휴식권이 보장받아야 한다.

## KUSF 대학스포츠인권 문화 캠페인 공감툰

### kusf 대학스포츠인권 문화 캠페인 나의 존중일지 우리 서로를 추앙해줘요



- ✓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 선배와 후배 간 상호존중한다.
- ✓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 ✓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대학스포츠 배움의 단란하세 즐긴 마음으로 평등하세

### kusf 대학스포츠인권 문화 캠페인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 ✓ 개인의 일(용-기구 준비 및 정리, 발레, 학교 과제 등)은 본인 스스로 한다.
- ✓ 개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지시 혹은 부탁하거나 떠넘기지 않는다.

대학스포츠 배움의 단란하세 즐긴 마음으로 평등하세

### kusf 대학스포츠인권 문화 캠페인 폭력 대신 대화 우린 말로 해결할 수 있어!!



-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 경기력 향상, 팀의 단합, 훈련 태도, 성적불만, 경기 결과에 대한 책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합이나 제벌, 기혹행위 등 폭력행사를 하지 않는다.

대학스포츠 배움의 단란하세 즐긴 마음으로 평등하세

대학스포츠인권  
공감툰 시리즈가  
더 궁금하다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는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의 협의체로서 대학스포츠 현안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 연구 조정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설립됐습니다.

창립총회 2010. 6. 8.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2010. 7. 16.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는 2010년 6월 8일 설립 이래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 136개 회원대학과 더불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축인 대학스포츠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설립 목적

- ▶▶ 대학스포츠 방침 심의 결정
- ▶▶ 대학스포츠 규정 집행 감독
- ▶▶ 대학스포츠 제도 연구 협의 조정
- ▶▶ 대학스포츠 권익 증진
- ▶▶ 대학스포츠 국내외 스포츠 행사 지원
- ▶▶ 대학 학생선수들의 스포츠맨십과 아마추어리즘 고양
- ▶▶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 지원
- ▶▶ 대학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 ▶▶ 대학 학생선수의 대학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지·덕·체의 건전한 리더십을 함양한 전인적 스포츠 인재로 양성



### 주요 사업

<b>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b> 2024년 61억 지원 (124개 대학, 475개 운동부)	<b>대학운동부 교육 강화</b>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교육 대학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b>학생선수 선발 정상화</b> 체육특기자 정책 제언,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설명회
<b>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b> C° 규정, 학사관리지원(두드림), 진전선수촌 이동수업	<b>대학스포츠 국제교류</b> 미국, 일본, 영국 등 각국 대학스포츠 유관기관 교류	<b>대학스포츠 인권 증진</b> 대학스포츠 인권 증진 캠페인,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교육강사 양성
<b>대학스포츠 통합마케팅 및 홍보</b> KUSF U-스포츠마케팅 리더, KUSF 대학생 기자단, 대학스포츠 콘텐츠 제작 및 홍보	<b>KUSF U-리그</b> 농구(남/여), 배구(남/여), 아이스하키, 야구, 축구	<b>KUSF 클럽 챔피언십</b> 농구, 배구, 야구, 축구, 3x3농구, 실내 트라이애슬론, 탁구, 볼링, 플레그풋볼, 배이스볼5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회원대학 (136개교)

가천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백석대학교	위덕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민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인제대학교
강동대학교	국제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천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군장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서대학교	김천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진남과학대학교
강원대학교	김해대학교	상명대학교	진북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삼지대학교	전주기전대학
건국대학교	남부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선문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경주대학교	대경대학교	성결대학교	제주대학교
경동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제주한림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세경대학교	조선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대덕대학교	세종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세한대학교	중부대학교
경성대학교	대전대학교	송원대학교	중앙대학교
경운대학교	동강대학교	송호대학교	중원대학교
경일대학교	동국대학교	수원대학교	청운대학교
경희대학교	동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청주대학교
계명대학교	동서대학교	송실대학교	초당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동신대학교	신성대학교	충남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아주대학교	충북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양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광운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안양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광주대학교	동원대학교	여주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구미대학교	동의대학교	영남대학교	한남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영산대학교	한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마산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한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명지대학교	용인대학교	한양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목원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우석대학교	호남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호서대학교
국립청원대학교	문경대학교	울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배재대학교	원광대학교	홍익대학교

※ 2025. 2. 28. 기준, 136개 회원대학

# 대학스포츠 인권 리플릿



## 대학스포츠 인권위원회 소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는 인권 친화적인 대학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1년에 대학스포츠 인권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대학의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즐겁게 공부하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생활하고,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대학운동부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 발행일 2025년 2월 28일
- 발행인 조명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 발행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 올림픽공원 내 테니스경기장
- 전화 02-707-3767
- 홈페이지 www.kusf.or.kr

이 책의 저작권은 KUSF에 있으며, 불법복제 및 무단사용을 금지합니다.  
© KUSF, 2025

